

예비양부모님께 입양체제 개편을 안내드립니다.

□ 공적 입양체제 개편이란 무엇인가요?

- 2025.7.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2023.7.18.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그간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해 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하게 됩니다.

□ 체제 개편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합니다.
- 예비양부모님의 입양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받고, 상담 및 가정조사는 위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예비양부모님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 입양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법 개정으로 임시양육결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님이 입양 허가와 함께 임시양육을 신청하실 수 있고, 가정법원이 아동과 예비양부모님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이 있으면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군·구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예비양부모님이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 체제 개편 후 입양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예비양부모님은 기존의 입양기관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추후 안내 예정)를 갖추어 입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입문 과정을 먼저 수료하셔야 합니다(신청 후 기본 과정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신청 후 위탁기관이 예비양부모님에 대한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정환경 조사는 2회 이상 방문 조사를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님의 결연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 결연이 이루어지면 예비양부모님은 아동과 만남을 가진 후,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양 허가 전 아동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을 받으면, 양부모님은 1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위탁기관)과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 후(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간) 아동과 양부모님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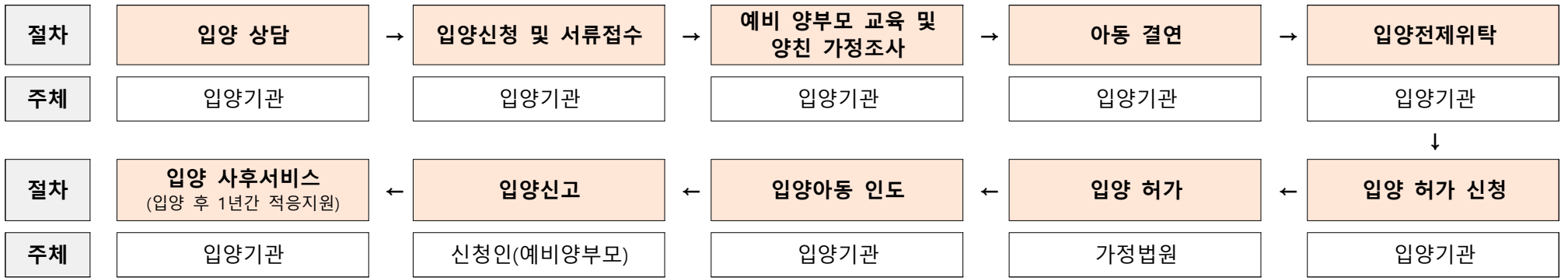
□ 주요 변경사항 - ' 25.7월 입양체제 개편 전후 국내입양 진행 절차

절차	수행주체	
	현행	개편 후
① 입양상담 신청 및 접수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② 부모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③ 가정조사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위탁기관)
④ 아동-양부모 결연	입양기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⑤ 입양허가	가정법원 (신청 : 입양기관)	가정법원 (신청 : 예비양부모)
임시양육결정	X	
⑥ 친양자입양신고	예비양부모	예비양부모
⑦ 입양 사후서비스 (입양 후 1년간 적응지원)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위탁기관), 시·군·구(아동 주소지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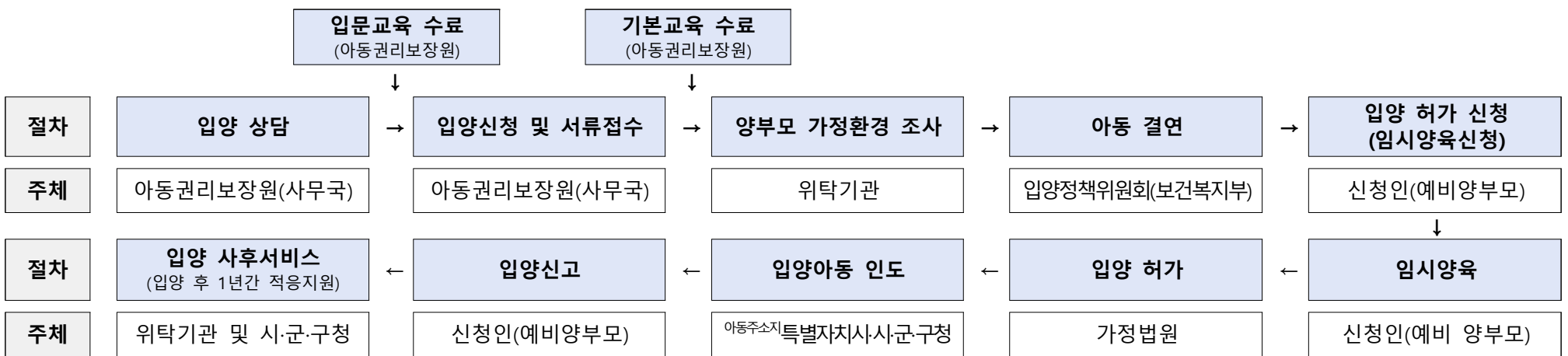
참고

입양체제 개편 관련 절차별 세부 사항 안내 (시행 2025. 7. 19.)

1. 기존 절차(변경 전)



2. 개편 절차(변경 후)



3. 세부 변경 사항

	양부모 자격 기준 일부 변경	입양 상담·신청 기관 변경	양부모 자격·결연 심의 절차 도입	입양 허가 신청 주체 변경	임시양육결정, 임시후견인 제도 도입
기존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입양기관별 상담·신청	입양기관별 양친 가정조사 및 조사서 발급, 결연위원회 진행	입양기관 + 신청인(예비 양부모)	입양 허가 신청 이후, 아동 후견인의 동의하에 입양전제위탁 가능 (법적 근거 부재)
변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 상담·신청 → 신청 창구 일원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국내입양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신청인(예비양부모)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가정법원의 결정 → 위탁기관·지자체의 아동적응상황 점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4.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02-6454-8603, 8604)